

OECD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정 은 희*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음성 로밍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밍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금 폭탄을 막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OECD, ITU, APEC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EU는 지난 1월 초 국가적 통신규제기관인 BEREC을 출범시키면서 로밍요금을 포함한 통신규제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모바일로밍시장과 요금 구성 요소 등을 파악하고, EU 로밍요금 규제 분석과 더불어 최근 OECD에서 발표한 OECD 회원국의 로밍요금 수준과 정책적 제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로밍요금, 로밍요금 규제, OECD 로밍요금, Eurotariff

목 차

- I. 서 론 / 18
- II.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개요 / 20
 - 1.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시장 / 20
 - 2.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과금 구조 / 23
- III. EU의 로밍 관련 규제 / 27
- IV. OECD 회원국의 로밍요금 비교 / 30
- V. 정책적 시사점 / 37
 - 1. 시장 경합성을 위한 정책 / 37
 - 2. 높은 도매요금에 대한 정책 / 38
 - 3. 소비자 관점에서의 정책 / 39
- VI. 결 론 / 40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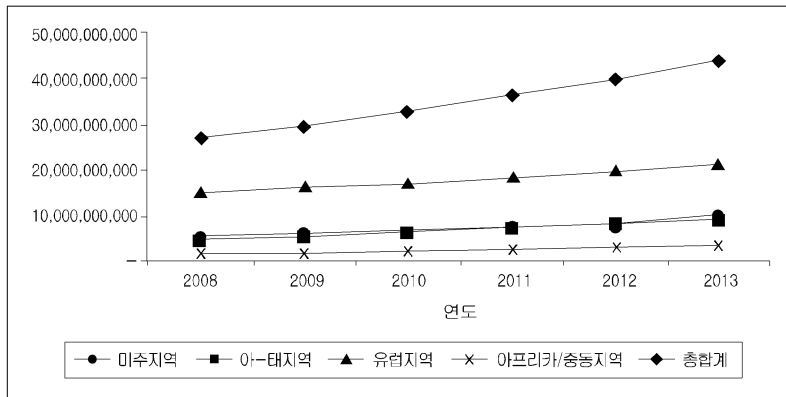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의 꾸준한 증가 추세와 함께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음성 로밍¹⁾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밍 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다. 영국 시장 조사 기관인 Informa Telecoms and Media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 국제모바일로밍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기구협력센터 연구원, (02)570-4215, ehjeong@kisdi.re.kr

1) 로밍(roaming service): 영어로 ‘배회한다’는 뜻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해외의 자체통신설비가 없

서비스 소매부문 수익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전 세계 통화량 또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이하 “로밍서비스”) 통화량도 2005년도 대비 2009년에는 2배 이상 증가³⁾했다. 이와 같은 로밍서비스 증가추세는 자동로밍과 같은 휴대폰 기능과 해외에서 로밍된 휴대폰을 이용해 국내에 전화를 걸 경우, 국내전화 접속번호나 국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상대방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연결되는 서비스 도입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수익(소매부문) 전망(2008~2013년)
(단위: 유로)



자료: Informa Telecoms and Media(2008)

<표 1> 우리나라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통화량(2005~2009년)

(단위: 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Inbound ⁴⁾ Calls	30,946,654	52,346,724	56,156,184	76,431,555	73,938,746
Outbound ⁵⁾ Calls	64,450,007	90,164,829	124,643,147	147,617,310	137,514,438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2010)

는 지역에서 다른 회사 설비를 통해 가입자들이 음성, SMS,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임

2) Informa Telecoms and Media(2008)

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2010)

4) Inbound(I/B) calls: 외국 가입자가 국내 이동통신사 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경우

5) Outbound(O/B) calls: 국내 가입자가 해외 이동통신사 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경우

로밍요금은 개별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로밍시 자신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자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간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 국의 규제 정책들이 논의되거나 진행 중이며, 지난 2008년부터는 OECD,⁶⁾ ITU,⁷⁾ APEC⁸⁾ 등 국제기구에서도 로밍요금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EU⁹⁾의 경우, 지난 1월 BEREC¹⁰⁾을 출범시키면서 로밍요금을 포함한 통신규제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시장 현황, 로밍서비스의 요금 구성 요소 등을 분석하고, EU 로밍요금 규제와 더불어 최근 OECD에서 발표한 OECD 회원국의 소매로밍요금(retail roaming prices) 수준과 정책적 제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개요

1.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시장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로밍 요금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2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연합인 GSMA¹¹⁾은 1년에 1회 이상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지역별로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로밍서비스 사용자는 3%에 불과했지만,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

6)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

7)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9)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0)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유럽연합 산하기구로 회원국마다 상이한 통신환경, 서비스,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코자 2010년 1월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되었음

11) 비동기식 이동통신사업자 연합(GSM Association, GSMA): 219개국, 약 800개의 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로 지난 1982년 설립됨

지역의 경우는 33%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1/3이 로밍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하지만 새로이 급성장하는 이머징마켓(아·태지역 포함) 등에 힘입어, 2008년 3억 1천 5백만명이었던 전세계 로밍서비스 사용자 수가 2013년 6억 3천 8백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¹³⁾

<표 2> 지역별 연간 1회 이상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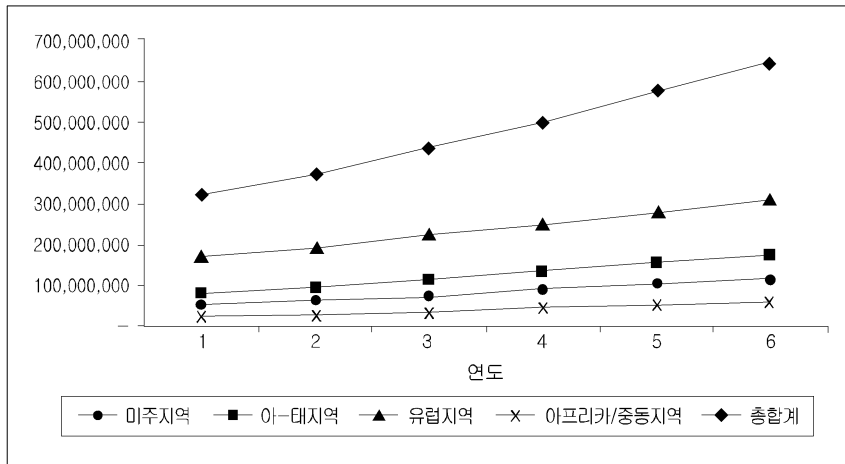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비율
아시아·태평양	8
유럽	33
남미	3
중동·아프리카	10
북미	17

자료: GSMA(2007)

[그림 2]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이용자 수 전망(2008~2013년)

(단위: 명)



자료: Informa Telecoms and Media(2008)

12) OECD(2009)

13) Informa Telecoms and Media(2008)

이렇게 증가하는 로밍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로밍요금이 여전히 높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OECD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분당 로밍요금(발신기준)은 약 \$2.60(USD)로 많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높은 로밍요금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높은 IOT¹⁴⁾는 높은 소매요금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소매요금의 약 3/4가 IOT로 산정되고 있다.¹⁵⁾ 각 이동통신 사업자의 로밍서비스에 대한 마진율은 10%~30%까지이며, 이는 로밍 관련 비용인 테스트, 계약 등의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IOT는 대량구매할인(volume discount), 협상력(negotiation power), I/B와 O/B 통화량 차이(traffic balance) 등에 결정된다.

둘째,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해 로밍서비스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 또한 로밍시장의 비탄력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국내 음성통화, SMS, 단말기 보조금, 통화품질 등을 고려하는 반면, 로밍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 로밍서비스와 패키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로밍서비스의 요금 고지가 로밍사업자 간 정산 등의 이유로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금 폭탄 사례가 더욱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로밍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대체 서비스는 현재까지 없다. 대안적 통화방법¹⁶⁾으로 글로벌 MVNO를 통한 두 개 국가에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단일 SIM 카드, 현지 SIM 카드 및 듀얼 SIM 구입, Wi-Fi 로밍 등 다수의 ACPs가 지목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VoIP,¹⁷⁾ TNP¹⁸⁾ 등의 대체서비스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추고 있지

14) 국제망사용료(Inter Operator Tariff, IOT): 방문망 사업자가 로밍망 제공에 대한 이용 대가를 상대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이며, 로밍 도매요금을 의미하기도 함

15) OECD(2009)

16) 대안적 통화방법(Alternative Calling Procedures: ACPs)

17)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인터넷을 통해 통화할 수 있는 통화기술, 기존부터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통신용 패킷망을 인터넷폰에 이용

18) 임시번호이동제(Temporary Number Portability, TNP): 로밍 서비스를 사용 전 현지 국가의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복잡한 현지폰 임대료를 피하는 것으로 최근 Truphone社가 Vodafone社와

않다. 대체재에 대해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으며, 더불어 대안적 통화방법들이 끊임 없이 쓸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이 발달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식과 브랜드 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시장의 비탄력성으로 로밍서비스사업자들은 높은 로밍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밍서비스 시장은 경합성이 한정되어 있어, 더 이상 많은 경쟁을 도입하기 어렵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스펙트럼의 부족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인허가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성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미 OECD 회원국들의 이동통신 시장은 비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과금 구조

지난 3월부터 SKT는 국내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초당과금제를 도입했지만, 로밍서비스의 경우 원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로밍서비스의 경우, 각 나라의 개별 이동통신사업자와 개별 협상·계약에 따라 원가의 상당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와 같이 일괄적으로 로밍요금을 낮추는 것은 힘들다.

〈표 3〉 OECD회원국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및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과금 체계
(단위: 초)

국가명	사업자명	설치비	로밍 과금 체계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과금 체계
호주	Telstra	수신만 해당 (USD 0.26)	발신: 지역에 따라 다름 (60-60, 30-30, 1-1 등) 수신: 1-1(에어타임 제외)	요금제에 따라 다름
오스트리아	Mobilkom	없음	60-60	요금제에 따라 다름
벨기에	Proximus	없음	60-1	60-1
캐나다	Rogers Wireless	없음	60-60	60-60

MVNO 제휴를 체결하여 서비스 중임

국가명	사업자명	설치비	로밍 과금 체계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과금 체계
체코공화국	T-Mobile	없음	수·발신지역에 따라 다름 (60-60, 30-30 등)	요금제에 따라 다름
덴마크	TDC Mobile	없음	수·발신지역에 따라 다름 (60-60, 30-30, 60-1 등)	요금제에 따라 다름
핀란드	Sonera	없음	30-30	60-60
프랑스	Orange	없음	60-1	1-1
독일	T-Mobile	없음	60-60	60-1
그리스	Cosmote	없음	60-60	30-1
헝가리	T-Mobile	없음	60-60	60-60
아이슬란드	Siminn	없음	60-60	60-10
아일랜드	Vodafone	없음	60-30	1-1
이탈리아	TIM	수신만 해당 (USD 0.20)	60-60	요금제에 따라 다름
일본	NTT DoCoMo	없음	60-60	30-30
한국	SK Telecom	없음	60-60	10-10*
룩셈부르크	LUXGSM	없음	60-15	요금제에 따라 다름
멕시코	Telcel	없음	60-60	1-1
네델란드	KPN Mobile	없음	발신: 60-30 수신: 60-60	요금제에 따라 다름
뉴질랜드	Vodafone	없음	60-60	요금제에 따라 다름
노르웨이	Telenor Mobile	몇몇 국가에서의 수신만 해당(USD 0.11)	수·발신지역에 따라 다름 (60-60, 30-30, 60-1 등)	1-1
폴란드	PTK Centertel	없음	60-60	1-1
포르투갈	TMN	없음	60-60	요금제에 따라 다름
슬로바키아 공화국	Orange	없음	60-60	1-1
스페인	Telefonica Moviles	발신만 해당 (요금제에 따라 다름)	1-1	1-1
스웨덴	Telia	몇몇 국가에서의 수신만 해당	발신: 60-60 수신: 30-30	요금제에 따라 다름

국가명	사업자명	설치비	로밍 과금 체계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과금 체계
스위스	Swisscom	없음	60-60	10-10
터키	Turkcell	없음	60-60(후불제) 6-6(선불제)	6-6
영국	O2	없음	발신: 60-15 수신: 1-1	1-1
미국	AT&T	없음	60-60	60-60
이스라엘	Cellcom	몇몇 국가에서의 수신만 해당	발신: 지역에 따라 다름(60-60, 30-30, 30-10 등) 수신: 60-60	n/a

* 우리나라 SKT는 2010. 3. 1일자로 초당과금제를 도입함

주: 위의 표에서 과금 “60-60”은 항상 60초 과금을 적용하는 의미이며, “60-1”은 처음 60초에 대해서만 60초 과금을 적용하고 이후 통화에 대해서는 초당으로 과금한다는 의미이나, 과금 단위는 국가별, 사업자별로 상이함(위의 과금 체계는 후불제(post-paid)만 적용한 것임)

자료: OECD(2009)

로밍요금의 구성요소는 무선 호 발신(mobile origination), 유·무선 호 착신(mobile/fixed termination), 국제통화(international transit), 그리고 각종 로밍비용(테스트, 계약 등 관련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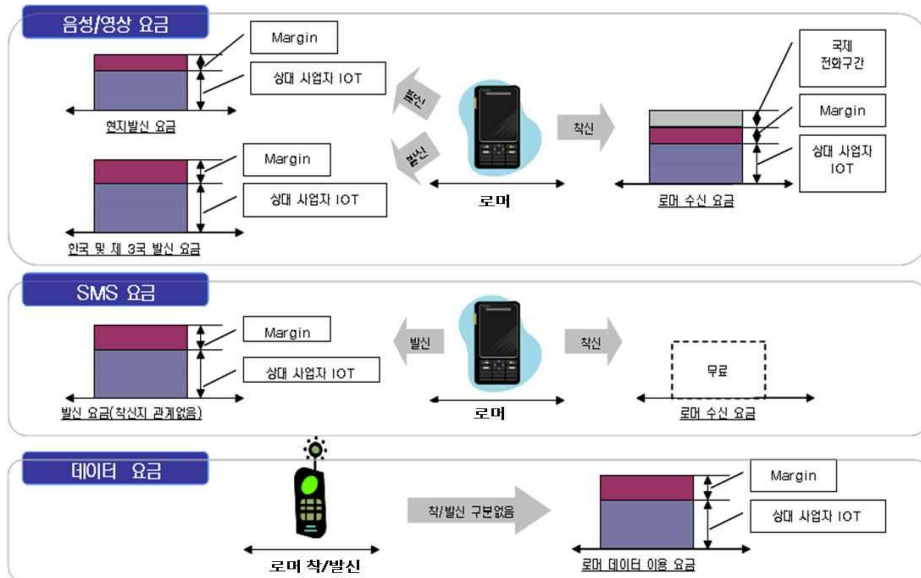
<표 4>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 구성 요소

구 분	구성 요소	
방문국내 발신 (예: 미국내 발신)	무선 호 발신 [국내 통화료]	
	무선 호 착신(미국)	
	로밍 관련 비용(도매)	
	로밍 관련 비용(소매)	
방문국 → 본국 발신 (예: 미국 → 한국)	무선 호 발신	
	국제 통화료	
	유·무선 호 착신(한국)	
	로밍 관련 비용(도매)	
	로밍 관련 비용(소매)	

구 분	구성 요소	
방문국 → 제3국 발신 (예: 미국 → 프랑스)	무선 호 발신	
	국제 통화료	
	유·무선 호 착신(한국)	
	로밍 관련 비용(도매)	
	로밍 관련 비용(소매)	
수신 (예: 한국 → 미국)	무선 호 발신	
	국제 통화료	
	로밍 관련 비용(도매)	
	로밍 관련 비용(소매)	

자료: ITU(2008)

[그림 3]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 구성 체계



자료: KT 로밍기획팀(2009)

〈표 5〉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사용 절차

절 차	내 용
위치 등록	로머가 Serving Network에서 단말기를 “on” 했을 경우 위의 경로를 통하여 해외 사업자의 망에서 로밍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획득
사용 가능 서비스	위치등록 성공 후 당사 HLR ¹⁹⁾ 에서 내려온 사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외에서 음성/데이터/SMS/영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현지 음성 발신	현지 가입자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사용가능
국제 음성 발신	해외 사업자가 정한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자에게로 전달
국제 음성 수신	가입자가 정한 국제전화회선(데이콤, KT 등)을 이용해 현지 망으로 전달
SMS	SMS 발신 시, 현지 망에서 국내사업자의 SMSC ²⁰⁾ 로 모두 보내서 처리하도록 함
데이터	데이터 서비스 사용 시, 현지 망의 SGSN ²¹⁾ 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IP 대역을 할당 받아 서비스 이용

자료: SKT 로밍사업팀

Ⅲ. EU의 로밍 관련 규제

지난 1월 EU는 BEREC이라는 초국가적 통신규제기관을 설립하여 기술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요금제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말 EU는 핀란드 및 이태리의 국제로밍서비스 도매요금 및 시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기존의 도매요금 규제만으로는 소매요금을 인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2006년 로밍요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로밍요금 상한 규제 방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6월 EU 권역 내의 도·소매요금을 규제하는 ‘Eurotariff’를 도입하였다.

19) HLR(Home Location Register): 가입자 Profile을 저장한 Database Server

20)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 SMS를 관장하는 서버

21)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 데이터 서비스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환기

<표 6> EU 로밍요금 규제 조치 주요 논의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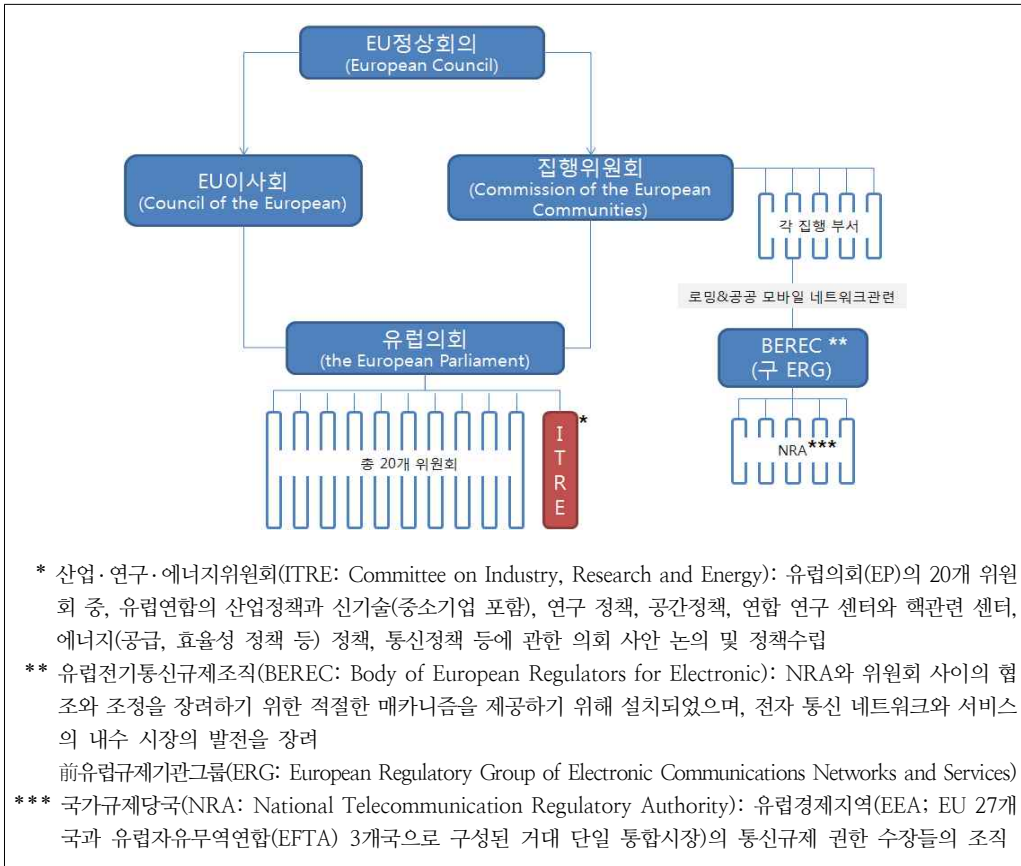
일 시	주요 내용
1999. 7	○ 유럽위원회 모바일 로밍 수·발신 요금 질의 착수
2001. 7	○ 영국과 독일 이통사 동의하의 로밍요금 조사
2003. 2	○ 도매요금의 권고안(recommendation) 포함
2005. 3	○ 유럽의회 상임위 ITRE위원회의 로밍 요금 공청회 개최
2005. 12	○ NRA의 로밍요금 문제 해결책에 대한 ERG의 경고
2006. 3	○ 유럽이사회의 로밍요금 절감을 위한 경쟁 촉진 중요성 지적
2006. 7	○ 유럽위원회의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EU 역내 로밍요금 정책 제안서 발간
2007. 4	○ ITRE 보고서 발표 및 유럽위원회 채택
2007. 5	○ 유럽 의회의 표결
2007. 6	○ 유럽이사회의 로밍요금 규제 법안 승인

자료: ITU(2008)

지난 2007년 6월 EU회원국의 통신부 장관들은 EU 역내 로밍요금 상한선을 정하는 만장일치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EU 통신 집행위원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 집행위원회가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는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국제 로밍서비스를 통해 (국내 요금보다) 20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로밍 요금이 국내 가격보다 3~4센트(US달러 기준) 이상 많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²²⁾ 지난 2009년까지 적용된 로밍요금 상한선은 첫째인 2007년에는 발신의 경우 49센트/분당, 수신인 경우 24센트/분당으로 각각 제한되었다. 또한 법규 발효 2년째인 2008년에는 로밍요금 상한선이 발신의 경우, 46센트/분당과 수신인 경우 22센트/분당, 3년째엔 발신의 경우, 43센트/분당과 수신인 경우, 19센트/분당으로 각각 내렸다.

22) 전자신문(2008. 2. 13)

[그림 4] EU 통신요금관련 규제 기관 조직도



참조: 외교통상부(www.mofat.go.kr) 및 ERG(www.erg.eu.int) 홈페이지

이러한 EU의 로밍요금 규제 정책은 이른바 ‘고지서 충격(bill shocks)’에 대한 두려움 없이도 유럽 역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 국경 없는 하나의 단일 시장을 만든다는 EU의 전략적 목표가 녹아 있다. 또한 최근 EU는 휴대폰 데이터 요금 상한선을 법제화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데이터 요금 상한선을 2010년 7월 1일 까지 최대 월 사용료를 지정하고, 별다른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 값인 50유로(VAT 제외)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또한 80%까지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 본인이 직접 지정한 값 혹은 기본값

인 50유로를 초과하면 자동 차단되는 방식이다. 물론 소비자가 요금을 더 지불하겠다고 한 뒤 제한을 푸는 재량도 있다.²³⁾ 이러한 EU의 로밍요금 규제 정책이 우리나라에 모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정 가격에 맞는 합리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에게도 EU의 데이터 요금 상한선은 참조할 만하다.

<표 7> EU 로밍요금 상한제 진전 과정 및 최종안

(단위: € 센트/분당)

구분		EC 안		EP 1안	EP 2안	EP 최종
		산식	€/cents/분당			
도매	방문국내 발신	2 × MTR	23.20	24.68	23	30(1차년도)
	방문국 → 본국/제3국 발신	3 × MTR	34.80			28(2차년도)
						26(3차년도)
소매	국내(지역내) 발신	2 × MTR + 30% 마진	30.16	38.68	40	49(1차년도)
						46(2차년도)
	방문국 → 본국/제3국 발신	3 × MTR + 30% 마진	45.24			43(3차년도)
						24(1차년도)
	수신	1 × MTR ²⁴⁾ + 30% 마진	15.08			26.34
19(3차년도)						

자료: ERG(www.erg.eu.int) 홈페이지

IV. OECD 회원국의 로밍요금 비교

지난 2009년 12월 OECD는 OECD회원국의 음성과 SMS(데이터 서비스 제외)의 소매요금과 평균값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밍요금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OECD가 로밍요금의 약 3/4이 IOT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23) ERG(2009)

24) 모바일 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

PPP²⁵⁾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머가 OECD 국가에서 로밍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방문국내 발신은 \$1.56(USD)/3분당, 본국으로의 발신은 \$5.41(USD)/3분당, 수신은 \$1.36(USD)/3분당, 그리고 SMS 수·발신은 \$0.21(USD)/3분당으로 비교적 OECD 평균보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찾는 OECD 회원국의 외국 로머의 경우, 국내 발신은 \$7.86(USD)/3분당, 본국으로의 발신은 \$7.79(USD)/3분당, 수신은 \$4.49(USD)/3분당, 그리고 SMS 수·발신은 \$0.55(USD)/3분당으로 비교적 OECD 평균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로머에 비해 2~3배 정도 비싸게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로밍서비스 유형별 우리나라 평균 로밍요금(OECD 회원국 간) 수준
(단위: USD/3분 기준)

구분		방문국내 발신	방문국 → 본국 발신	수신	SMS 발신 (건당)	비고
한국 사용자가 OECD 국가들에서 로밍 중	요금	1.56	5.41	1.36	0.21	OECD 국가 중 상당히 낮은 수준
	OECD 평균	6.76	7.79	4.49	0.55	
외국 사용자가 한국에서 로밍 중	요금	7.86	9.03	5.48	0.61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
	OECD 평균	4.91	6.86	3.88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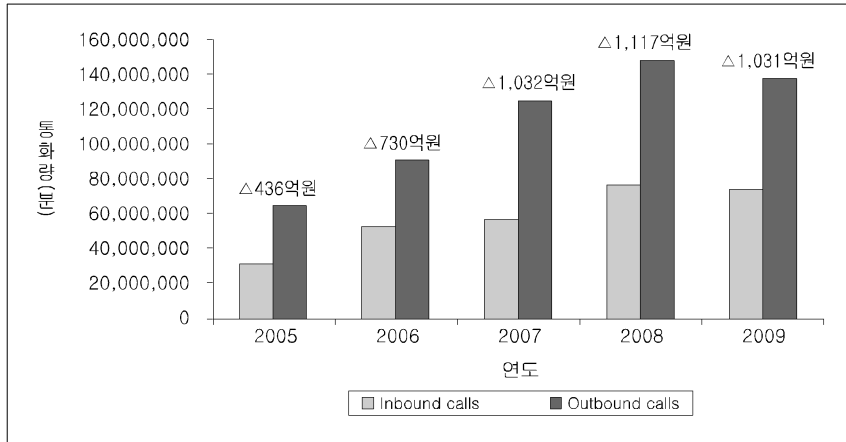
주: OECD는 각 국가의 1위 사업자의 요금을 비교(조사시점: 2009년 2월), 이에 우리나라는 SKT 로밍요금이 해당됨
자료: OECD(2009)

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로머들이 OECD 회원국들의 로머들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으로 로밍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요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로밍서비스 요금은 높다. 더불어

25)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양국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

어 각 국가마다의 환율 및 소득수준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로머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낮다고 단순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로머의 통화량인 O/B가 많아 정산수지 적자는 2008년부터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림 5]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통화량 및 정산수지(2005~2009년)
(단위: 분)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2010)

<표 9> OECD 회원국 로머의 방문국내 평균 발신요금

(단위: USD/3분 기준)

목적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출발지	호주	3.67	3.61	4.35	3.59	1.54	2.15	2.85	2.85	2.44	2.22	1.76	1.64	3.74	3.10	2.69	1.23	2.69	3.30	3.24	3.61	2.87	1.76	3.08	2.17	3.24	3.00	3.53	3.04	3.06	5.03	2.90
호주																																
오스트리아	9.22			9.22										16.91	16.91	16.91		16.91			8.07							4.61	8.84		8.07	11.57
벨기에	10.57			7.69										10.57	10.57	10.57		17.29			10.57							7.69	7.69		7.69	10.09
캐나다	2.41	3.62	2.41		6.03	3.62	3.62	2.41	2.41	3.62	3.62	2.41	2.41	6.03	2.41	4.82	3.62	4.82	6.03	2.41	6.03	3.62	4.82	3.62	2.41	3.62	2.41	2.41	7.23	2.41	2.29	3.69
체코공화국	7.24			7.24										7.24	7.24	7.24		7.24			7.24							4.67	4.67		7.24	6.73
덴마크	5.16			5.16										5.16	5.16	5.16		5.16			5.16							2.21	2.38		5.16	4.60
핀란드	7.11			8.07										11.34	7.11	7.11		11.34			7.11							3.27	9.99		8.07	8.05
프랑스	11.14			4.53										11.14	11.14	11.14		11.14			11.14							11.14	4.53		4.53	9.16
독일	11.49			5.73										11.49	11.49	11.49		11.49			11.49							5.73	5.73		5.73	9.18
그리스	4.57			4.57										4.57	4.57	4.57		4.57			4.57							4.57	4.57		4.57	4.57
헝가리	4.87			6.50										6.50	11.06	7.12		11.06			7.12							4.87	3.64		6.50	6.92
아이슬란드	12.26			7.48										12.26	7.48	7.48		12.26			12.26							2.21	6.30		7.48	8.75
아일랜드	12.68			6.15										11.53	12.68	12.68		6.15			12.68							2.15	3.42		5.38	8.55
이스라엘	2.88	5.40	3.87	3.81	3.22	2.51	2.31	4.74	3.58	5.40	1.84	1.25	1.89		7.46	2.73	2.42	2.46	4.21	4.42	4.28	2.71	1.99	2.49	2.71	3.66	2.66	4.49	5.02	6.49	8.36	3.71
이탈리아	11.53			7.69										11.53	11.53	11.53		23.06			11.53							3.84	7.69		7.69	10.76
일본	2.59	2.59	2.59	4.04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2.59	4.04	2.65
한국	1.49	1.83	1.49	2.98	1.61	1.26	0.92	1.83	1.83	1.03	0.92	1.26	0.92	1.95	2.06	1.15	1.26	2.52	1.61	1.95	1.38	0.80	2.06	1.38	1.49	1.26	1.49	1.38	1.26	2.52	1.56	
룩셈부르크	12.68			12.68										15.69	15.69	15.69		15.69			12.68							1.99	1.99		12.68	11.75
멕시코	8.97	8.97	8.97	4.14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4.14	8.65
네델란드	7.69			7.69										6.72	7.69	7.69		4.65			7.69							4.42	7.69		5.76	6.77
뉴질랜드	3.13	4.27	4.18	5.40	3.48	3.39	2.09	5.14	3.31	2.44	2.18	1.74	1.92	4.27	5.40	3.13	2.61	3.13	3.83	3.66		3.05	1.74	3.05	2.52	3.66	3.48	3.83	3.39	3.57	10.79	3.59
노르웨이	2.28			4.10										3.96	2.40	2.07		2.90			3.81							3.05	3.05		4.10	3.17
폴란드	6.61			4.29										6.61	6.61	6.61		6.61			6.61							4.05	4.05		4.29	5.63
포르투갈	7.84			7.84										10.84	10.84	10.84		10.84			10.84							5.76	7.84		7.84	9.13
슬로바키아공화국	15.03			15.03										15.03	15.03	15.03		15.03			15.03							5.92	10.47		10.47	13.20
스페인	11.22			8.10										11.22	11.22	11.22		11.22			11.22							8.10	8.10		8.10	9.97
스웨덴	4.22			3.43										2.91	4.22	4.22		2.61			4.22							1.90	3.43		3.43	3.46
스위스	3.61	2.19	2.19	3.61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4.13	2.19	4.13	4.13	2.19	4.13	2.19	3.61	2.19	2.19	2.19	2.19	2.19	2.19	3.61	2.19	3.61	2.69	
터키	8.65	6.34	6.34	8.65	6.34	6.34	6.34	6.34	6.34	6.34	6.34	6.34	6.34	8.65	6.34	8.65	8.65	6.34	8.65	6.34	8.65	6.34	6.34	6.34	6.34	6.34	6.34	6.34	6.34	6.34	8.65	6.96
영국	3.67			5.92										8.60	8.60	8.60		8.60			3.67							1.64	5.92		5.92	6.12
미국	5.58	4.26	4.26	2.61	7.56	4.26	4.26	4.26	4.26	4.26	4.26	4.26	4.26	8.22	4.26	7.56	7.56	4.26	3.27	4.26	7.56	4.26	7.56	6.57	6.57	4.26	4.26	4.26	7.56	4.26	5.16	
평균	7.28	4.31	3.99	6.29	4.56	3.67	3.54	4.13	3.83	3.93	3.51	3.28	3.31	8.34	4.48	8.10	7.86	3.87	8.48	3.97	7.73	3.80	3.88	4.10	3.90	3.88	3.84	4.39	5.50	4.11	6.34	6.76

주: OECD는 각 국가의 1위 사업자의 요금을 비교(조사시점: 2009년 2월), 이에 우리나라는 SKT 로밍요금이 해당됨

자료: OECD(2009)

<표 10> OECD 회원국 로머의 해외 → 본국 평균 발신요금

(단위: USD/3분 기준)

목적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호주																																
오스트리아	9.22		9.22											16.91	16.91	16.91												4.61	8.84	8.07	11.57	
벨기에	4.61		4.23											4.61	4.61	4.61											4.23	4.23	4.23	4.76		
캐나다	4.82	6.03	4.82		8.44	6.03	6.03	4.82	4.82	6.03	6.03	4.82	4.82	8.44	4.82	7.23	6.03	7.23	8.44	4.82	8.44	6.03	7.23	6.03	6.03	4.82	6.03	9.64	4.82	4.10	6.08	
체코공화국	7.24			7.24										7.24	7.24	7.24											4.67	4.67		7.24	6.73	
덴마크	6.19		6.19											12.38	6.19	12.38											2.21	4.13	6.19	7.44		
핀란드	7.11		8.07											11.34	7.11	7.11											3.27	9.99	8.07	8.05		
프랑스	11.14		4.53											11.14	11.14	11.14											11.14	4.53	4.53	9.16		
독일	11.49		5.73											11.49	11.49	11.49											5.73	5.73	5.73	9.18		
그리스	10.05		10.05											10.05	18.28	18.28											6.87	6.87	10.05	12.71		
헝가리	4.87		6.50											6.50	11.06	7.12											4.87	3.64	6.50	6.92		
아이슬란드	12.26		7.48											12.26	7.48	7.48											2.21	6.30	7.48	8.75		
아일랜드	6.92		6.15											6.53	6.92	6.92											2.15	3.42	5.38	5.74		
이스라엘	19.15	13.64	13.84	9.53	14.30	9.46	6.60	14.71	10.13	13.65	7.66	5.83	4.98		18.46	15.14	10.04	3.61	13.87	10.88	14.93	4.36	13.53	12.44	8.04	14.93	8.24	11.14	10.48	8.89	14.32	11.23
이탈리아	11.53		7.69											11.53	11.53	11.53			23.06		11.53						3.84	7.69	7.69	10.76		
일본	5.82	5.82	5.82	4.52	5.82	5.82	5.82	5.82	5.82	5.82	5.82	5.82	5.82	12.28	5.82		4.04	5.82	12.28	5.82	5.82	5.82	5.82	5.82	5.82	5.82	5.82	5.82	5.82	5.82	5.82	6.10
한국	5.28	4.13	5.85	4.82	8.49	6.08	3.67	5.05	4.59	2.18	6.42	4.01	7.22	7.34	6.88	2.75		2.75	9.63	2.75	8.26	2.75	6.42	7.00	6.54	5.28	4.24	5.62	5.05	6.08	5.05	5.41
룩셈부르크	8.79		8.79											11.00	11.00	11.00			11.00		8.79						1.99	1.99	8.79	8.52		
멕시코	4.50	4.50	4.50	1.74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1.74	4.32
네델란드	4.42		4.42											6.72	7.69	7.69			15.10		7.69						4.42	4.42		5.76	6.83	
뉴질랜드	12.45	9.23	14.89	20.11	16.45	9.49	5.40	20.80	9.23	14.89	8.97	5.66	8.70	12.53	14.89	10.01	8.10	6.44	12.53	8.88		4.27	11.49	14.89	12.36	10.97	7.22	10.18	16.80	6.70	9.84	11.14
노르웨이	5.27		8.12											11.80	10.07	7.45			7.45		8.64						3.05	3.05	7.00	7.19		
폴란드	6.61		4.29											6.61	6.61	6.61			6.61		6.61						4.05	4.05	4.29	5.63		
포르투갈	7.84		7.84											10.84	10.84	10.84			10.84		10.84						5.76	7.84	7.84	9.13		
슬로바키아공화국	15.03		15.03											15.03	15.03	15.03			15.03		15.03						5.92	10.47	10.47	13.20		
스페인	11.22		8.10											11.22	11.22	11.22			11.22		11.22						8.10	8.10	8.10	9.97		
스웨덴	7.74		5.28											8.81	7.74	7.74			8.60		7.74						1.90	4.22	5.28	6.50		
스위스	5.68	2.19	2.19	5.68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9.55	2.19	9.55	9.55	2.19	9.55	2.19	5.68	2.19	2.19	2.19	2.19	2.19	2.19	2.19	5.68	2.19	5.68	3.75
터키	8.65	6.34	6.34	8.65	6.34	6.34	6.34	6.34	6.34	6.34	6.34	6.34	6.34	8.65	6.34	8.65	8.65	6.34	8.65	6.34	8.65	6.34	6.34	6.34	6.34	6.34	6.34	6.34	6.34	6.34	8.65	6.96
영국	3.67		5.92											7.35	7.35	7.35			7.35		3.67						1.51	5.92	5.92	5.92	5.60	
미국	5.58	4.26	4.26	2.61	7.56	4.26	4.26	4.26	4.26	4.26	4.26	4.26	4.26	8.22	4.26	7.56	7.56	4.26	3.27	4.26	7.56	4.26	7.56	6.57	6.57	4.26	4.26	4.26	7.56	4.26	5.16	
평균	8.17	6.23	7.08	7.13	8.77	6.04	5.08	7.40	5.94	6.60	6.15	4.83	5.64	9.80	7.72	9.38	9.03	4.74	11.04	5.59	8.77	4.47	7.26	7.27	6.48	6.81	5.52	5.01	6.51	5.49	6.82	7.79

주: OECD는 각 국가의 1위 사업자의 요금을 비교(조사시점: 2009년 2월), 이에 우리나라는 SKT 로밍요금이 해당됨

자료: OECD(2009)

<표 11> OECD 회원국 로머의 평균 수신요금

(단위: USD/3분 기준)

목적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출발지	호주	2.19	2.62	5.39	2.44	2.11	1.94	1.92	1.92	1.66	2.44	2.41	1.76	1.78	1.84	1.92	2.25	2.00	5.70	2.11	1.51	2.19	2.70	3.11	1.74	2.35	1.92	1.92	2.27	1.63	5.84	2.45	
호주																																	
오스트리아	7.49		7.49											7.49	7.49	7.49		7.49		7.49								2.50	3.65		7.49	6.61	
벨기에	4.23		3.46											4.23	4.23	4.23		8.07		4.23								3.46	3.46		3.46	4.30	
캐나다	4.82	6.03	4.82		8.44	6.03	6.03	4.82	4.82	6.03	6.03	4.82	4.82	8.44	4.82	7.23	6.03	7.23	8.44	4.82	8.44	6.03	7.23	6.03	6.03	4.82	6.03	4.82	9.64	4.82	2.89	6.04	
체코공화국	5.63		5.63											5.63	5.63	5.63		5.63		5.63								2.41	2.41		5.63	4.99	
덴마크	6.19		6.19											12.38	6.19	12.38		12.38		6.19								1.06	2.06		6.19	7.12	
핀란드	7.11		6.34											6.34	7.11	7.11		6.34		7.11							2.11	4.03		6.34	5.99		
프랑스	5.38		2.11											5.38	5.38	5.38		5.38		5.38							5.38	2.11		2.11	4.40		
독일	6.88		5.53											6.88	6.88	6.88		8.95		6.88							2.65	2.65		5.53	5.97		
그리스	2.31		2.31											2.31	4.13	4.13		2.58		2.31							2.31	2.31		2.31	2.70		
헝가리	1.55		1.93											1.93	3.64	2.78		3.64		2.78							1.55	1.31		1.93	2.30		
아이슬란드	2.35		4.98											2.35	1.95	1.95		5.35		2.35							1.05	1.55		5.30	2.92		
아일랜드	7.69		4.19											7.69	7.69	7.69		4.19		7.69							1.04	2.65		4.19	5.47		
이스라엘	3.25	4.31	1.55	5.52	1.78	2.73	3.47	1.59	1.54	1.90	2.05	1.78	3.47		1.61	1.56	2.22	1.50	4.75	1.54	1.57	3.25	4.24	4.18	4.91	1.68	2.81	1.65	2.27	1.50	5.67	2.73	
이탈리아	7.51		9.45											7.51	7.51	7.51		14.26		7.51								1.93	5.78		10.35	7.93	
일본	2.59	3.56	3.56	5.66	3.56	3.56	3.56	3.56	3.56	3.56	3.56	3.56	3.56	4.52	3.56		2.26	3.56	5.82	3.56	2.59	3.56	3.56	3.56	3.56	3.56	3.56	3.56	3.56	3.56	3.56	5.66	3.70
한국	0.85	1.33	1.38	3.15	1.40	1.38	1.38	0.78	0.77	1.38	1.40	1.38	1.38	1.83	0.78	0.55	1.38	4.42	0.85	0.92	1.40	1.43	0.66	1.40	0.85	1.38	0.85	0.66	0.78	2.78	1.36		
룩셈부르크	3.27		3.27											4.33	4.33	4.33		4.33		3.27							0.93	0.93		3.27	3.23		
멕시코	8.97	8.97	8.97	4.14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8.97	4.14	8.65
네델란드	2.08		2.08											5.00	5.96	5.96		5.96		5.96		5.96						2.08	2.08		5.00	4.21	
뉴질랜드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노르웨이	1.50		5.08											4.47	2.01	2.29		7.81		4.04								1.74	1.74		5.08	3.58	
폴란드	4.13		2.48											4.13	4.13	4.13		4.13		4.13								1.65	1.65		2.48	3.30	
포르투갈	3.04		3.04											5.99	5.99	5.99		5.99		5.99								2.03	3.04		3.04	4.42	
슬로바키아공화국	3.62		3.62											3.62	3.62	3.62		3.62		3.62								3.62	3.62		3.62	3.62	
스페인	11.22		8.10											11.22	11.22	11.22		11.22		11.22								8.10	8.10		8.10	9.97	
스웨덴	5.63		2.37											8.92	5.63	5.63		5.63		5.63								0.88	1.85		2.37	4.45	
스위스	2.06	1.03	1.03	4.1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3.10	1.03	3.10	7.74	1.03	7.74	1.03	2.06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96	
터키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영국	4.80		4.45											6.09	6.09	6.09		6.09		4.80								0.78	3.67		4.45	4.73	
미국	5.58	4.26	4.26	2.61	7.56	4.26	4.26	4.26	4.26	4.26	4.26	4.26	4.26	8.22	4.26	7.56	7.56	4.26	3.27	4.26	7.56	4.26	7.56	6.57	6.57	4.26	4.26	4.26	7.56	4.26	5.16		
평균	4.56	3.67	3.32	4.32	4.02	3.51	3.57	3.20	3.19	3.38	3.48	3.32	3.43	5.53	3.19	5.09	5.48	3.50	6.14	3.22	5.04	3.57	4.18	3.91	3.92	3.26	3.50	2.68	3.35	3.16	4.48	4.49	

주: OECD는 각 국가의 1위 사업자의 요금을 비교(조사시점: 2009년 2월), 이에 우리나라는 SKT 로밍요금이 해당됨

자료: OECD(2009)

<표 12> OECD 회원국 로머의 평균 SMS 요금

(단위: USD/건당)

목적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호주		0.51	0.37	0.44	0.40	0.46	0.34	0.43	0.34	0.38	0.31	0.38	0.33	0.88	0.43	0.38	0.41	0.25	0.39	0.39	0.40	0.34	0.27	0.49	0.33	0.60	0.45	0.42	0.33	0.31	0.51	0.41	
오스트리아	0.54			0.54										0.54	0.54	0.54		0.54		0.54								0.41	0.41		0.54	0.51	
벨기에	0.64			0.64										0.64	0.64	0.64		0.64		0.64								0.64	0.64		0.64	0.64	
캐나다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8
체코공화국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3	0.43		0.48	0.47	
덴마크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핀란드	0.37			0.37										0.37	0.37	0.37		0.37		0.37								0.37	0.37		0.37	0.37	
프랑스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독일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그리스	0.53			0.53										0.53	0.61	1.89		1.89		0.61								0.46	0.46		0.53	0.80	
헝가리	0.34			0.52										0.52	0.75	0.59		0.75		0.59								0.34	0.34		0.52	0.52	
아이슬란드	0.65			0.65										0.65	0.65	0.65		0.65		0.65								0.65	0.65		0.65	0.65	
아일랜드	0.37			0.37										0.37	0.37	0.37		0.37		0.37								0.37	0.37		0.37	0.37	
이스라엘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이탈리아	1.14			0.63										1.14		1.14		1.14		1.14								0.37	0.63		0.63	0.91	
일본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룩셈부르크	0.23	0.23	0.23	0.11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11	0.23	0.11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11	0.21
멕시코	0.63	0.63	0.63	0.40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40	0.40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40	0.60
네델란드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뉴질랜드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0.46
노르웨이	0.58			0.58										0.58	0.58	0.58		0.58		0.58								0.58	0.58		0.58	0.58	
폴란드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포르투갈	0.61			0.61										0.61	0.61	0.61		0.61		0.61								0.61	0.61		0.61	0.61	
슬로바키아공화국	0.55			0.60										0.70	0.60	0.50		0.60		0.70								0.50	0.50		0.50	0.58	
스페인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스웨덴	0.47			0.47										0.69	0.47	0.47		0.41		0.47								0.35	0.35		0.47	0.46	
스위스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터키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영국	0.43			0.36										0.58	0.58	0.58		0.58		0.43								0.36	0.43		0.36	0.47	
미국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평균	0.55	0.51	0.50	0.52	0.50	0.51	0.49	0.50	0.50	0.50	0.49	0.50	0.49	0.59	0.50	0.54	0.61	0.49	0.61	0.50	0.56	0.49	0.49	0.51	0.49	0.52	0.51	0.50	0.51	0.49	0.52	0.55	

주: OECD는 각 국가의 1위 사업자의 요금을 비교(조사시점: 2009년 2월), 이에 우리나라는 SKT 로밍요금이 해당됨

자료: OECD(2009)

V. 정책적 시사점

OECD가 올해 3월 발표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분석 및 권고(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s: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는 로밍요금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시장 경쟁 상황 및 높은 요금에 관한 원인분석을 촉구하고, 높은 도매 요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와 패키지로 판매되어 소비자들이 로밍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할 시 로밍요금에 대해 근본적으로 주의를 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OECD가 제안한 주요 정책적 제안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제안인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1. 시장 경합성을 위한 정책

OECD는 몇몇 국가에서의 MVNOs²⁶⁾에 대한 규제와 모바일 사업자들에 대한 통신 접근 보장에 대한 규제 지원 제공이 시장 경합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장 경합의 가장 효과적인 형태는 Zain 또는 Vodafone Passport²⁷⁾처럼 ‘망내 할인제(on-net tariff)’를 허용하는 공동 소유권의 국제적 경쟁 네트워크를 갖은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신 이에 근접한 해결방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FreeMove’, ‘Starmap’, ‘Bridge Alliance’ 등과 같은 국가간 제휴를 통해 다수의 해외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망내 할인제를 실현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 간 단 한 개의 표준 협정을 통해 복수의 로밍 제도 진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못하며, 우리나라는 Vodafone과 같은 다국적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로밍의 망내 할인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 모바일가상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MVNOs)

27) Vodafone Passport는 UK 국내요금을 별도의 로밍요금 없이 35개국의 유럽국가, 호주, 뉴질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2. 높은 도매요금에 대한 정책

GSMA가 설립한 구속력 있는 정보 아래, IOT의 실 요금은 국내 경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IOT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IOT 구조의 한 가지 문제점은 투명이 결여되어 트래픽 전송, 허브, 다른 기술 등이 도매요금에 어느 정도까지 경쟁적 압박을 주는 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OT가 소매요금처럼 공개가 되어야 한다. IOT 공개는 상업적 기밀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규제자들이 개개인의 사업 데이터를 대중들에게 제공하지 않고서도 IOT 경쟁 수준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제 정책을 알리기 위한 벤치마킹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IOT 공개는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공개된 IOT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IOT 공개를 이용해 회사들이 요금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한다면, IOT 공개가 잠재적으로 경쟁에 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IOT 공개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높은 로밍 소매요금이 주로 높은 도매요금 때문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 인식시켜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요금공개가 도매요금 감소에 대한 압박감을 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EU는 EU 역내의 도매 로밍요금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OECD는 intra-EU 트래픽을 제외한 OECD 회원국들 간의 양·다자간 협정 서명 방식을 올 하반기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러한 협정을 통해 eurotariff와 약간 다른 방식의 원가를 기초로 한 도매요금이 시장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OECD는 2009년, 2010년 두 차례의 로밍서비스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권고안과 OECD 국가들 간의 양·다자간 협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본 협정안을 개별 OECD 회원국이 채택할 경우, 31개국 OECD 회원국 모두 WTO²⁸⁾ 회원국이기 때문에 협정안이 발효 될 경우 WTO 통신참조문서와 유사하게 OECD 회원국들간의 복수국간

28)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소비자 관점에서의 정책

최근 EU에서 실시한 데이터 서비스 로밍요금 규제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나온 소매요금 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로밍서비스 이용과 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가 훨씬 더 시급하다. 실제 로밍요금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그로 인해 종종 이어지는 요금폭탄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로밍요금에 관한 투명성과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로밍요금인 아닌 ACP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에 로밍서비스 사업자들은 로밍요금(음성, SMS, 데이터 서비스)과 애플사의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로밍 할 시 유의점²⁹⁾ 등의 유용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특정 소비(예: 3, 5, 10만원에 도달할 경우) 시초에 도달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시간의 정확한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노력과 함께, TNP와 같이 여행기간 중 국내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TNP는 계획된 해외여행 이전에 신청해야하며, 여행 이후 사용자는 원래 국내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다른 로밍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와 패키지로 이용되는 현 로밍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소비자 협회 등은 로밍서비스 실수요자들에게 더블 SIM 단말기 구입을 장려, 국내 SIM-카드 구입 방법, 국내 공중전화 사용방법, 국제 전화카드 유효성 등의 잠재적 로밍 대체재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9) 국제데이터로밍요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데이터 로밍을 “OFF”하고 또한 많은 호텔과 공항 등에서 3G/GPRS/EDGE 대신 Wi-Fi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Ⅵ. 결 론

우리나라의 로밍요금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로밍 커버리지 부족, 요금원가산정방식의 불투명성과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인하에도 해마다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³⁰⁾가 그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마련’,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 및 요금제 개선’,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3박자를 이루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소비자들이 로밍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7년 이전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국제로밍요금을 반영하지 않아, 이용자가 사전에 정확한 사용요금을 알 수 없었다. 이는 당시 국제적 관행을 따른 것이었으나, (구)정보통신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7년부터 외국 이동통신사와 체결된 요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이용 약관에 원화를 환산하여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³¹⁾ 최근 EU가 도입한 ‘소비자가 직접 설정하는 데이터로밍상한제’와 같은 실현가능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도·소매 요금 직접규제, IOT 공개, global-MVNO 도입 여부 등의 이슈들의 국내 적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둘째, 통신사업자들은 로밍요금의 정확한 고지, 건전한 로밍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 AT&T社의 경우, 홈페이지에 ‘Get iPhone travel tips’와 함께 로밍요금을 공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데이터 서비스 로밍과 관련하여 ‘Global Messaging 50’와 같은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로밍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들을 주목하고, Bridge Mobile Alliance, Connexus Mobile Alliance 등 제휴를 통해 요금제

30) 매일경제(2010)

31) 정보통신부(2007)

개발 및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로밍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비싼 로밍요금에 대응하여 통신서비스 이용 자체가 아닌 대체서비스(더블 SIM 단말기, 현지 SIM 카드, VoIP 등)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불 가능한 만큼의 로밍서비스를 사용하고, 이동통신사가 보내는 SMS 등의 공지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몇몇 국가들과 사업자들은 EU의 ‘도·소매 로밍요금 규제 정책’으로 인한 워터베드 효과³²⁾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통신사업자, 소비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올바른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0), “국제로밍서비스 집계·분석 현황”, 2010. 2.
- KT 로밍기획팀 (2009), “로밍서비스 요금 구성 체계”. 2009. 12.
- SKT 로밍사업팀 (2009), “모바일로밍서비스 사용 절차”, 2009. 12.
- 《매일경제》, (2010. 4. 14), “통신요금인하정책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늘어”.
- 《전자신문》, (2008. 2. 13), “EU, 7월 1일까지 로밍 요금 내려라”.
- ERG (2009). “International Roaming Regulation: ERG Guidelines”, 2009. 9.
- GSMA (2007). “Convergencia Operator Survey”, 2007. 2.
- Informa Telecoms and Media (2008). “Global Mobile Roaming Market Outlook And Prospects To 2013”, 2008. 6. 2.
- ITU (2008).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Regulation—An Incentive for Cooperation”, 2008. 3. 13.
- OECD (2009).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Charging in the OECD Area”,

32) 워터베드 효과(waterbed effect): 한 곳을 낮추려고 할 때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효과

2009. 12. 21.

OECD (2010).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s: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2010. 3. 29.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ERG 홈페이지 www.erg.eu.int.